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l 제안연월일: 2022년 9월 26일 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용어의 명확화 등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, 정기적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방식을 규정하는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'일자리 지원'의 대상을 중장년으로 함(안 제2조).
- 일자리 지원계획의 수립 목적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.
-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함(안 제6조).
- 행정권한 이관방식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.

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제2항 중 "미취업자"를 "중장년"으로 한다.
- 안 제3조제1항 중 "일자리 창출을"을 "일자리를"로 한다.
- 안 제6조제1항 중 "실태조사를"을 "실태조사를 매년"으로 한다.
- 안 제8조의 조 제목 중 "업무의 위탁"을 "민간위탁"으로 하고, 제1항 중 "시출자"를 "서울특별시 출자"로 하며, "위탁"을 "민간위탁"으로 하고, 제2항 중 "민간 위탁에"를 "민간위탁에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조문대비표 〉

제2조(정의) (생략)

- ① (생략)
- ② "일자리 지원"이란 미취업자의 능력 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 거나 취업,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정안

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장년의 일 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 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 는 관련기관 또는 <u>시 출자</u>·출연 기관 에 **위탁**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 우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

- ① (제정안과 같음)
- ② "일자리 지원"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 나 취업.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수 정 안

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장년의 일 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 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"지원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
② ~ ④ (제정안과 같음)
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 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(제정안과 같음)
- 제8조(**업무의 위탁**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제8조(**민간위탁**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 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**서울특별시 출자**·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 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<u>민간위탁에</u>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 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"중장년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② "일자리 지원"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,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장년의 일 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
 - 2.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
 - 3.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 - 4.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

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해 서울특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
 - 2.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
 - 3.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
 - 4. 창업 상담과 교육
 - 5.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
 - 6. 취업 및 창업 지원,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5조(기관·단체와의 협력)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(이하 "관련기관 등")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

-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홍보) 시장은 언론사,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민간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